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법리와 사례 연구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2016. 9.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특강

목 차

I.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구성체계

II. 부정청탁의 금지

III. 금품등 수수 금지

V. 공직자등이 해야 할 조치와 신고.처리 절차

V. 분야별 쟁점

I.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1. Bribery(뇌물죄)와 Graft(부당이득죄)의 구별

- 뇌물죄에서는 금품수수(요구, 약속)나 부정청탁 외에 직무관련성, 대가성의 입증이 필요
- 금품수수나 학연.**지연을 이용한** 부정청탁 행위 자체가 공직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
- 합법적이나 공직윤리상 비난 받고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 공직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훼손. 서구유럽의 입법례와 같이 Bribey와 Graft를 구별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금지 처벌법 필요
- 참여연대 등 부패방지법의 내용은 크게 1) 부패방지기구 2) 퇴직 고위공무원 취업제한(전관예우 방지) 3)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금지 등의 내용이었는데,
- 1)은 국가청렴위원회(국민권익위)로, 2)는 공직자윤리법, 3)이 청탁금지법으로 10여 년에 걸쳐 입법화 되고 있는 셈.

I.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2. 청탁금지법의 구성체계 :

제1장 총칙 :

- 제2조(정의)에서 “공공기관”, “공직자 등”, “금품 등”의 개념 정리

제2장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의 14가지 구성요건과 7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예외)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금품등 수수 금지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예외)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절차

제5장 징계 및 벌칙

I.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3. 공공기관 등

1. 공공기관

- 국회와 법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 언론기관 포함
-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언론비판은 잘못된 분석.

2. 공직유관기관

3. 언론사

- 정기간행물(잡지)의 발간 등 "부수적 언론활동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행업무 종사자로 제한(국민 권익위).
- 발행업무 상근자만인지, 편집인과 발행인, 편집위원, 상급단위인 사무총장까지 포함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4. 사립학교

- 사립대학 부속병원 의사와 직원은 학교법인 임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
- 일반 종합병원 의사도 의과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면 '공직자등'에 해당

I.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4. “공직자 등”과 적용범위

1. 공직자의 배우자

1)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

2) 예 : 유아용품 대표 A가 환갑을 맞은 사립학교장 B와 절친이어서 배우자 C에게 200만원 전달한 경우 유아용품과 사립학교장은 직무관련성 없어 C에 청탁금지법 적용 않됨.

3)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님. 예) 국회의원 아들

2. 공무수행사인

1) 각종 위원회에 참여, 공공기관의 권한위탁, 공무상 심의.평가, 파견근무 등 민간인

2)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그러나 거버넌스 차원에서 임의로 설립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되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3. 한국회사 해외주재원 등이 현지 방문한 공무원, 기자 등을 접대한 경우

1) 형사법의 속인주의 원칙상 한국인 해외주재원과 공무원, 기자 등에 청탁금지법 적용

2) 현지 국적자가 현지 방문한 공무원, 기자 등을 접대한 경우 현지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방문하여 접대 받은 공무원, 기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II.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의 유형

1. 부정청탁의 방법 : 이해관계자가 직접 or 제3장 통하여 to “공직자 등”에게

2. 부정청탁의 유형 : 14가지 유형의 구성요건 예시

1)인가.허가 처리 2)행정처분과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 개입

5)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개입 6)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누설

7)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개입 8)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개입

9)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10)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1)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12)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13)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14)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3. 부정청탁의 핵심요소 : “법령에 위반하여” 와 “지위.권한 남용”

II. 부정청탁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7가지 위법성 조각사유 예시>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사회상규"가 추상적이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라는 예외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

II. 부정청탁의 금지

3. 부정청탁 금지의 처벌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제재 없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이 다른 공직자 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 등은 징계를 의무화하여 벌칙과 징계가 병과 됨)

II. 부정청탁의 금지

4. 유형과 사례 연구

1.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예)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법령위반) 것을 알면서도 구청 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공무원은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 공무원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

2. 청탁의 내용이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예) 사립대학 음악대학에 응시한 아들을 위하여 친구인 실기평가 교수에게 수험번호를 알려주면 ‘혹시 기회가 되면 잘 부탁한다’고 청탁한 경우와 ‘아들이 실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합격시켜 달라고 한 경우

→ 전자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재량권 행사해 달라는 취지’이어서 법령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후자의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부정청탁에 해당

II. 부정청탁의 금지

4.유형과 사례 연구

3. 청탁금지법 제5조 14가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기업 홍보담당 직원이 언론사 기자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사의 삭제를 요청

→ 기사 수정 및 삭제요청은 청탁금지법 제5조 1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4.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는 경우

예)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A가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법령위반)**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B가 대학동창인 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C를 통하여 형질변경 담당공무원 D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 토지소유자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한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친구 B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청탁한 경우**(2천만원 이하)
- **지방세 담당공무원 C는 공직자등이 제3자를 위하여 청탁한 경우**(3천만원 이하)
- D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만일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

II. 부정청탁의 금지

4.유형과 사례 연구

5.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예) 법인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건설회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구청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 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2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속직원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일반인에 해당(2천만원 이하)건축담당 공무원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만일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

6.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하는 경우

예) 중소기업 이사인 A는 해고된 직원 B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대학동창으로 해당사건 심판담당 공익위원인 변호사 C에게 B가 회사에 복귀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가 문닫을지도 모른다며 구제신청 기각을 부탁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구제신청 기각 청탁은

- 제5조 제14호 사건의 심판.결정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

III. 금품등 수수 금지

1. 금품등 수수 금지의 구성요건과 처벌

1)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여부는 불문. 직무관련성은 규모에 따라 고려

예)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

예)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행정벌)

2)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제

3) 부정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금품등' 수수행위 2가지 구성요건해당. 경합범.

* 이 경우는 형법상 뇌물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형법이 적용되면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음

III. 금품등 수수 금지

1. 금품등 수수 금지의 구성요건과 처벌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

1) 대법원 99도5763 판결 등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2) 대법원 2010도1082 판결 등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공무원이… 전화로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2. 직무관련성이 문제되는 사안

1) 공직자등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직무관련성 있어야
2)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도 직무관련성 있어야
3) 외부강의와 기고 등 사전신고의무와 사례금 제한도 직무관련성 있어야

3. 국민권익위의 "직무관련성" 유권해석이 너무 확대해석이라는 비판도

III. 금품등 수수 금지

2.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1. 상급 공직자가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금 등

2.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의 경우

1)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 10만원

2) 3만원 이하 식사 자리에서 부정청탁을 하면 부정청탁 부분은 따로 처벌 가능.

3. 대여(증여 제외)나 채무이행 등 사적거래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친족은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동창회 등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는 금품(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는 자)

6. 공직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물

8.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

III. 금품등 수수 금지

2.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2>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수수의 해석

1) 2가지 요건사실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 10만원”이라는 요건만이 아니라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요건도 갖추어야 위법성 조각

2) 학부모가 교사에게 3만원 이하 음식물(예:커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위반(?)

-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에 캔음료 제공도 청탁금지법 위반(?)
  → 국민권익위의 해석은 처음 보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음식물 대접하는 것은
- 사례.의례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임.
  → 하지만, Case에 따라서는 학부모.학생과 교사 사이에 사교.의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을 듯.

III. 금품등 수수 금지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적용대상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2.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 의무화

1)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의 경우 외부강의 등 제한

2) 정기간행물 발간 등 부수적인 언론활동 하는 단체(기업)도 소속기관장 설정하고
언론사 임직원에 해당하는 종사자, 편집인, 발행인 등은 사전신고해야

3. 기준금액 초과 사례금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초과금액 반환. 미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기준금액(1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½, 기고는 1회 기준)

1)공무원 : 4급 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

2)공직유관단체 :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

3)교사, 기자 등 : 1시간 당 100만원, 공무와 관련된 경우 1회 100만원, 기고 100만원

4)공무수행사인은 제외

III. 금품등 수수 금지

4. 유형과 사례연구

1. 1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

예)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친분이 있던 세무사로부터 3월부터 12월가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경우 (세무사는 해당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음)

- 1회계년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므로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와 담당공무원은 함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 1회 100만원 초과 1년 300만원 초과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세무사가 해당 시청 관련 업무를 하거나 할 계획이 없어도 처벌

2.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

예) 공공기관 과장과 해당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대표가 함께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셨는데, 식사비 60만원과 2차 술값 200만원을 회계법인 대표사 지급한 경우

- 1차와 2차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회계법인 대표와 과장 모두 형사처벌

III. 금품등 수수 금지

4. 유형과 사례연구

3. 한 회사의 여러 임원과 직원이 금품등 제공한 사례

예)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A에게 건설회사 임원 B가 70만원 양주를, 직원 C는 상품권 30만원, 직원D는 3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A는 형사처벌, B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2-5배인 140- 350만원의 과태료, C와 D는 60-150만원의 과태료, 건설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60-650만원의 과태료의 처벌

4.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

예) 문화정책담당자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동창이자 해당 시로부터 문화창작지원금을 받고 있는 오페라 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창작지원금 관련성이 인정됨

A는 배우자의 초대권 수수사실 모른 경우나 뒤에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재대상 아니나, 안 경우 120-300만원 과태료, B는 120-300만원 과태료

III. 금품등 수수 금지

4. 유형과 사례연구

5. 골프라운딩을 위해 공직자가 회사임직원 차량에 동승하고 라운딩 후 식사(음주) 제공받은 경우

"교통의 편의"도 "금품등"에 포함되나 목적지까지 동승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 큼.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음주)는 청탁금지법 위반

6.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식행사에서 시가 5만원(구입 시 2만5천원)의 사은품을 배포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금품등의 가액판단 기준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실제 구입비용으로 하고 영수증 등 실제 구입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7.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기자에게 직원할인을 적용 객실료를 시가보다 4만5천원 할인하여 받은 경우

1) 객실료 할인 등의 편의제공도 금품등에 해당.

2) 객실료 할인을 선물로 보아 5만원 이하의 위법성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IV. 공무원 등이 해야 할 조치와 신고.처리 절차

1.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받은 공무원이 취해야 할 조치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취해야 할 절차

1) 최초의 부정청탁인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2)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2. 금품등 수수를 받은 공직자등이 해야 할 절차

1) 금품등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2)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표시

3) 멸실.부패.변질 우려 있는 금품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3.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조치사항

1)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2)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4. 부당이득의 환수(제17조) : 공공기관의 장이

IV.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받은 공무원 등이 해야 할 조치

2. 신고와 처리절차

1. 신고접수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 조사기관

1)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2)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 제3자의 동의나 다른 법령근거 있는 경우 제3자 조사 가능

3. 과태료 부과절차

1) 조사기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소속기관장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통보(23조)

3)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18조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 후 고지하여 효력발생

4. 징계처분

형벌 또는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징계처분(21조)

V. 분야별 쟁점

1. 공직사회

1. 부정청탁과 관련한 실수

1) 청탁을 받는 경우

- 법령위반의 청탁과 권한과 지위 남용의 청탁만 문제
- 공개적으로 문서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권유
- 권리구제 절차나 건의나 청원 등의 공식절차를 이용하도록 권유

2) 청탁을 하는 경우

-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공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전달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구하도록

2. 금품 등 수수에서의 실수(?)

-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 없을 것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부주(10만원) : 향응과 접대문화 극복의 취지를 살려

3. 무엇보다도 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애매할 경우 신고절차를 활용

V. 분야별 쟁점

2. 대학과 병원

1. 성적처리와 관련한 문제

1) 성적 공지 후 학생들이 교수님께 메일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2) 성적이 나오지 않아 다음학기 수강할 터이니, 성적을 F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

2. 소위 "취업계" 문제

1)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의 경우 관행적으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적부여

2) 교육부는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각 대학에 공문으로 학칙의 근거마련 공지

3) 학칙자체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경우

3. 대학병원에 "입원" 민원

1) 입원이나 진료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경우

2) 암진단 등으로 위중하니 먼저 입원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

4. 대학병원에서 적용대상 범위 : 의대교수인 의사 외에

1) 사립학교연금법 적용대상인 간호사 등도 적용대상인가(?)

V. 분야별 쟁점

3. 회사 또는 단체활동

1. 동창회 회칙에 따른 경조사비

1) 공무원인 동창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동창회 명의로 100만원 초과 지급해도 동창회 회칙의 기준에 따른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되지 않음.

2. 사내행사에서 지방에서 오는 참가자에게 교통비와 숙박 등을 제공

1)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

3. 명절 사은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공직자에게도 보낸 경우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보기 어려움

2) 5만원 이하의 선물(실제비용 입증 어려우면 시가를 기준으로)

4. 회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업비를 공익단체에 기부. 기부받은 단체가 관련 사업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의 제반경비를 제공한 경우

1) 공직자등이 아닌 공익단체에 기부는 청탁금지법 대상 아님.

2) 그러나 단체가 사실상 “도관”역할만 하고 회사가 기자에게 경비지급한 경우라면

V. 분야별 쟁점

4. 기자 간담회나 공익입법 간담회

1. 의원실과 공익입법 간담회

1) 노조나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 대중단체와 시민단체가 공익입법운동 원에서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 하며 입법발의를 부탁하는 경우

2) 의원실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에서 입법발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기자 간담회

1)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간담회 참석한 기자들과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

2) 시민단체 등의 주요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개적이고 문서로

1) 위와 같은 입법발의나 취재 요청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그래도 공개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 간담회 요청하고 공익적 취지에서 입법발의나 취재 요청을 하는 이유 등을 문서로 남기는 것 등은 필요할 것.

3) 간담회 자리에서 식사를 가급적 같이 하지 않고, 만일 할 경우 식사비를 분담하는 문화에 동참해야...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든 사례들은 논란이 없도록 국민 권익위원회의 자료와
법률신문 기타 언론 등에서 들고 있는 사례를 예시로 하였음을 밝힙니다.